

의안번호	제 191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266 회)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영웅 의원 외 7인
발의연월일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
----------	-----

발의연월일 : 2007년 12월 3일

발 의 자 : 박영웅, 이기동, 장주식
임 현,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심홍섭(8인)

□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 (안 제2조)
- 나.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예우시책 (안 제4조)
- 다. 재향군인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안 제5조)

□ 참고자료

-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청북도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기타 도지사가 재향군인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발취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 (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제6조 (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수도권에 두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시·도회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시·군·구회를,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제16조 (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